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발주자직접지급제 도입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27.1.1.시행)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지급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 규정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점진적 확대 추진(부칙에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일 규정)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발주자 의무 명확화

- 발주자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세부적인 지급방식 및 절차를 명시
- 발주자직접지급제 방식의 시스템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확인하여 지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달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 2026. 1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2026-126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공사대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② 법 제34조제9항제2호에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3.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등록할 것

④ 법 제3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것(이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입금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방식

다. 발주자가 하수급인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경우 합의의 방식 및 효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준용한다.)

3.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에 직접 지급할 것

⑤ 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지급할 것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

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⑦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수급인이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

가. 2026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 업종별 상위 200위 이내 인 경우 : 2027년 1월 1일

나. 그 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28년 1월 1일

2. 수급인이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

가. 2026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 업종별 상위 100위 이내인 경우 : 2027년 1월 1일

나. 그 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28년 1월 1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

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가 아닌 지급	<삭 제>	

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입력해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신 설>	제28조의2(공사대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② 법 제34조제9항제2호에서 “1

	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3.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등록할 것 ④ 법 제3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

	되었는지 확인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것(이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입금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방식 다. 발주자가 하수급인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경우 합의의 방식 및 효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준용한다.) 3.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에 직접 지급할 것 ⑤ 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지급할 것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⑦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

	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